

21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3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724호

붙임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2.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취항할 수 있는 자
3. 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
4. 위 호의 요건들을 갖추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또는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해운법에 의한 선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③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을 국가나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 ④ 시장은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허가청의 내항여객운송면허 공모 시 제5조의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면허조건에 포함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여객운송사업자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로 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의 중단 및 환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받는 기간 동안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하는 경우
 2. 지원을 받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운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2. 7.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신설)	<p>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정적인 해상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2.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취항할 수 있는 자 3. 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 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 4. 위 호의 요건들을 갖추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자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해운법에 의한 선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운영비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3.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을 국가나 타기관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p>④ 시장은 선박확보 등을 위</p>

현 행	개 정 안
	<p>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협약의 내항여객 운송면허 공모 시 제5조의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면허조건에 포함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여객운송사업자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로 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의 중단 및 환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받는 기간 동안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하는 경우 2. 지원을 받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운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